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2월 16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,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(안 제3조)
- 3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대상(안 제4조)
- 4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개관 및 휴관, 이용시간, 이용료(안 제5조부터 제7조)
- 5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및 입장의 제한, 행위의 제한, 이용자의 의무(안 제8조부터 제10조)
- 6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(안 제11조)

- 7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위탁운영(안 제12조)
- 8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재정지원(안 제1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제정 이유

-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,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전임.

#### 2) 주요 내용

- 가)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(안 제3조)
- 다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대상(안 제4조)
  - 이용 대상을 9세 이하 어린이 및 보호자로 정함
- 라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개관 및 휴관, 이용시간, 이용료(안 제5조부터 제7조)
- 마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 및 입장의 제한, 행위의 제한, 이용자의 의무(안 제8조부터 제10조)
- 바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(안 제11조)
  - 놀이터의 이용에 따른 안전 사항 조치 및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1조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 손해 배상에 대비함
- 사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위탁운영(안 제12조)
- 아)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재정지원(안 제15조)

### <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개요 >

- 조성위치 : 지상1~4층(일조량, 환기, 비상대피로 확보시 (반)지하 가능)
- 공간면적 : 아동 1인당 10㎡ 이상
  - 공간구성 : 실내놀이공간 80%, 관리 및 지원공간 20%
- 주요내용 : 실내놀이공간 조성, 놀이돌봄서비스, 프로그램 운영
- 이용대상 : 0~만9세 아동(영·유아 + 초등학교 저학년)
- 이 용 료 : 이용료 3천원 + 놀이돌봄 2천원(보호자 포함 / 2시간)
- 종 사 자 : 시설면적 100㎡ 당 종사자 1인
  - 돌봄요원(보육교사·유치원교사·사회복지사 자격) 및 시설안전요원 각 1인 필수 배치
- 운영방법 : 자치구 직영, 민간위탁 운영 또는 공간제공자 지정 위탁 등
- 예산지원 : 설치비(시비100%), 운영비(시비 월150~190만원), 인건비(2인까지 시비 100% / 3~6인 시비 30%, 구비 70% / 6인 초과 구비 100%)

### 3) 검토 의견

-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다양하고 안전한 놀이공간 부족
  - 미세먼지,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실외 놀이활동 제약
  - 서울시 아동 권장 놀이시간 1일 1시간 대비 주중 평균 143분으로 부족(21년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)
- 민간 키즈카페의 높은 가격으로, 실내 놀이시설 이용구민 경제부담 가중
  - ※ 관내 민간 키즈카페(8개소) 평균 이용료 22,300원(평일 2시간 / 보호자 포함)
-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.
- 본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을 근거하여 금천구 관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